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7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최재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경훈,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서준오,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종국, 전병주,
최기찬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음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없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도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나. 교육재난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재난 피해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라.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재난 피해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를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통해”로 한다.

제3조의 제목“(교육감의 책무)”를“(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재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난지원금을”을 “교육재난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 등)”을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교육청</u> <u>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u></p>	<p><u>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u> <u>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 난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u>교 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u>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 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u>교육감의 책무</u>)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u>교 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통해</u> ----- ----- ----- -----</p> <p>제3조(<u>책무</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 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 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u> ③ <u>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u></p>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1. ~ 5. (생략)

제6조(지원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 -----

-----.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 (교육재난 피해조사)	△	○ 교육재난의 경우 피해발생시 피해상황을 관련 공무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사 후 조치(1)를 하고 있으며, 교육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2	제8조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	○ 매뉴얼은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표준매뉴얼(행안부 또는 중앙부처)교육부에서는 위기대응실무매뉴얼(교육부), 현장조치행동매뉴얼(교육청)
3	제9조 (학업 지원 등)	△	○ 교육재난의 경우 예비비 및 사업별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원범위 및 규모 등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	○ 협력체계 구축은 관련 공무원을 활용하여 구축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 대응 매뉴얼, 재난에 따른 학업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응 매뉴얼(붙임 참조)은 현재 기시행하고 있고, 협력체계 구축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련 피해 조사 및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원인원 및 규모·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1)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생 지원 현황 *출처 :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제공

년도	청별	재난유형	학교급	지원 대상	지원 내역	지원 방법	지원인원 (단위:명)
2022	본청	감염병	유·초·중·고·특수·각종·외국인학교, 학평·고등기술·평생교육시설	모든 학생	자가검사키트	물품	928,183
2022	본청	다중운집인파사고	고등학교	고등학생	치료비 지원	현금	2

(붙임)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1부.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장

자연재난



- ①-1 황사
- ①-2 폭염
- ①-3 태풍·집중호우·낙뢰
- ①-4 산사태
- ①-5 지진
- ①-6 지진해일
- ①-7 화산폭발
- ①-8 대설·한파

